

#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I .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675호
2. 발 의 자 : 조상호 의원
3. 제출일자 : 2019. 5. 24.
4. 회부일자 : 2019. 5. 30.

### II . 제안이유

- 현재 서울시교육청 및 직속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부설주차장은 직원 대상 정기주차 사용료가 서울시 소관 공영주차장과 비교해 매우 저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제한적이므로, 현행 정기주차 사용료를 서울시 공영주차장 수준으로 인상하고 일반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주차면수의 비율도 상향하여 시민 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 Ⅲ. 주요내용

1. 가. 현행 교육청 부설 공영주차장 정기주차요금을 서울시 공영주차장 수준으로 인상
2. 일반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주차면수를 현행 40%에서 70%이상으로 상향

### Ⅳ.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주차장법」
2.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안건 참고).
3. 기 타

입법예고(2019. 6. 4.~ 6. 12): 의견 없음.

##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19년 5월 24일 조상호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 675호로 발의되어 2019년 5월 3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본청 및 소속기관<sup>1)</sup> 부설주차장의 정기주차 사용료를 서울특별시 수준으로 조정하고 시민의 편익을 위해 일반이용자 비율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 2. 주요 검토의견

#### 가. 부설주차장 사용 현황과 사용료 부과 체계

-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sup>2)</sup> 따라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고자 설치된 것으로

1)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2)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부설주차장은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오지·벽지·섬 지역, 도심지의 간선도로변이나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으로서 주차난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3. 단독주택·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별로 정하거나 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호실별로 정하려는 경우
4.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역의 주차장 확보율, 주차장 이용 실태,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다르게 정하려는 경우
5. 대한민국 주재 외국공관 안의 외교관 또는 그 가족이 거주하는 구역 등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 주택 등의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6. 시설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7.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중형 또는 대형 승합자동차만 해당한다)의 출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서 현재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본청 및 소속기관 부설주차장에 총 1,886면의 주차면 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중 본청,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학생체육관, 평생학습관, 도서관(고척, 동대문, 종로 제외), 그리고 중부와 성동광진교육지원청의 주차장 1,174면은 유료로 사용되고 있고, 과학전시관 등 나머지 기관의 712면은 무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정기주차의 경우에는 대부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총 주차면 수의 25.9%인 488면이 사용되고 있습니다.<sup>3)</sup>

- 다만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정기주차 사용료체계와 관련해서 현행 조례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급지 구분을 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체계와 달리 급지 구분에 상관없이 3만원의 단일 요금체계로 되어 있는바,

**[표1]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별표]**

(단위 : 원-1구획당)

구분	시간주차 (1회 주차시 5분당)	정기주차
1급지	400	30,000
2급지	250	30,000
3급지	150	30,000
4급지	100	30,000
5급지	50	30,000
<b>&lt;비고&gt;</b>		
1.~6. (생략)		
7. 전체 주차면의 40%는 일반이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동 개정조례안이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정기주차에 대한 현행 요금체계를 서울특별시와 동일하게 급지 구분에 따른 차등적 요금체계로 개정하려는 것은 시간주차 사용료와의 형평성 제고 측면과 서울특별시 급지 구분을 따르도록 명시한 현행 조례 [별표]에 부합한다는 점

3) 2019년 월별 부설주차장 이용 현황은 [붙임1], [붙임2] 참고.

다만 정기주차와 관련해서 북부, 강동송파, 강남서초, 동작관악, 성북강북교육지원청의 경우에는 일반 시민에게는 무료로 개방하되 직원들에게는 정기주차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음.

에서 타당한 입법적 조치로 사료됩니다.

## 나. 정기주차 사용료의 적정성

○ 동 개정조례안은 [별표]에서 부설주차장의 정기주차 요금을 급지별로 1급지 25만원부터 5급지 3만원까지 차등적으로 징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요금체계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1]의 노외주차장 월정기 요금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표2]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단위 : 원-1구획당)

구 분	노 상 주 차 장				노 외 주 차 장		
	1회주차시 5분당	1일주차권 (야간에한함)	월 정 기 권		1회주차시 5분당	월 정 기 권	
			주 간	야 간		주 간	야 간
1급지	500	5,000	-	-	400	250,000	100,000
2급지	250	4,000	-	-	250	180,000	60,000
3급지	150	3,000	-	-	150	100,000	40,000
4급지	100	2,000	50,000	-	100	환승목적주차시	20,000
						40,000	
						기타	
						50,000	
5급지	50	1,000	30,000	20,000	50	30,000	20,000

○ 그러나 현행 「주차장법」 제2조가 주차장을 노상, 노외, 부설로 구분하면서<sup>4)</sup> 그 이용자의 범위도 부설주차장은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으로 노외주차장과는 달리 규정하고 있는바, 부설주차장 사용료를 노외주차장의 이용요금과 동일하게 책정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

### 4) 「주차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인 기준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sup>5)</sup>

- 한편 [표2]와 같이 현재 서울특별시교육청(본청 및 소속기관)의 부설 주차장 평균요금을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 다른 시·도교육청의 평균요금과 비교하여 보면,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시간주차와 정기주차 사용료 모두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보다 저렴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어 관내 행정기관간의 형평성 차원에서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표3] 부설주차장 평균요금 비교표**

(단위:원-1구획당)

구분	서울시교육청 및 소속기관	서울시청 및 자치구청 <sup>6)</sup>	타시도교육청 (본청)
	현행		
5분당 평균 요금	207	291	25
직원 정기주차 평균 사용료(월)	30,000	52,190 (32,952) <sup>7)</sup>	5,000
일반이용자 주차공간 확보율	40%	36%	30%

5) 인천광역시와 대구광역시를 제외한 14곳의 시·도교육청은 별도의 조례 없이 무료개방을 하고 있는 상황 이고,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경우만 동 개정조례안과 같이 「인천광역시교육감 소관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별표]에서 부설주차장 사용료를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별표1]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

**<인천광역시교육감 소관 부설주차장 사용료>**

구분	시간주차 (1회 주차시)		전일주차	월 정기주차
	최초 30분까지	30분 이후 15분당		
1급지	1,000원	500원	10,000원	100,000원
2급지	600원	300원	6,000원	60,000원
3급지	400원	200원	4,000원	40,000원
4급지	300원	150원	3,000원	30,000원

- 비 고 -

- 이 별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시간주차"라 함은 1일 내 임시적으로 주차하는 것을 말한다.
  - "정기주차"라 함은 소속공무원 등 상시출입 직원에 한하여 월 단위로 주차하는 것을 말한다.
- 급지 및 요금은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를 적용한다.
- 인근 주차장과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부설주차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관의 실정에 따라 30% 범위 안에서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6) 서울시청 및 자치구청별 요금현황은 [붙임3] 참고.

7) 서울시청 및 2개 자치구청은 장애직원 대상 정기주차만 운영(및 감면을 적용)하므로 실제 정기주차 사용료는 32,952원임.

다만 동 개정조례안과 같이 급지별로 정기주차 사용료를 1급지 기준으로 기존요금보다 최대 8배까지 인상하게 되면 동작관악교육지원청처럼 일반인이 이용하는 경우에는 요금인상에 따른 민원이 발생할 소지도 있는 만큼 사용료 인상범위에 대해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8)

- 다음으로 동 개정조례안은 일반이용자에 대한 주차면 배정과 관련하여 [별표] 부설주차장 사용료 <비교>에서 현행 40%인 일반이용자 사용 비율을 70%로 상향 조정하였는바, 일반이용자의 편익을 증진시킨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표4]의 본청 부설주차장 사용현황을 보면 동 개정조례안과 같이 일반이용자 비율을 상향조정할 경우 직원들 정기주차면 수를 인위적으로 감소시켜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현행 정기주차 이용자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성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표4] 본청 부설주차장 주차면수**

법정면수	보유면수	일반이용자 주차면 확보면수	정기주차면수
148	167 (100%)	73 (44%)	94 (56%)

#### 다. 교육청 의견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동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부설주차장 사용료를 서울특별시의 공영주차장 요금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은 직접적인 비교대상으로 부적정하고 일반이용자의 주차면 수 확보 비율 상향조정도 현행 수준으로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고 하면서 현행과 같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733., 2019.6.5.)

8)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은 지역주민의 요청에 따라 직원 외에 야간주차에 한해 15면을 일반인에게 제공하고 있음.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정부분 부설주차장 사용료 인상요인이 있는 상황이고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이용비율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당연한 책임이라는 점에서 현행과 같이 유지되어야 할 실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붙임1]

2019년 부설주차장 사용 현황(1~2월)

구분	기관명	주차장 이용 현황(월 누계 대수)				비고
		평일/ 공휴일	2019년			
			1월	2월	소계	
본청	서울시교육청	평일	634	986	1,620	
		공휴일	-	-	-	공휴일 무료 개방
직속기관	과학전시관	평일	-	-	-	무료 개방
		공휴일	-	-	-	무료 개방
	교육시설관리본부	평일	-	-	-	미개방
		공휴일	-	-	-	미개방
	교육연구정보원	평일	-	-	-	서울시(중부푸른녹지사업소)에서 주차장 운영
		공휴일	-	-	-	서울시(중부푸른녹지사업소)에서 주차장 운영
	교육연수원	평일	9,000	9,000	18,000	
		공휴일	-	-	-	공휴일 무료 개방
	유아교육진흥원	평일	-	-	-	무료 개방
		공휴일	-	-	-	무료 개방
	학생교육원	평일	-	-	-	무료 개방
		공휴일	-	-	-	무료 개방
학생체육관	평일	359	401	760		
	공휴일	604	638	1,242		
평생학습관	고덕평생학습관	평일	412	348	760	
		공휴일	-	-	-	공휴일 무료 개방
	노원평생학습관	평일	1,212	913	2,125	
		공휴일	536	572	1,108	
	마포평생학습관	평일	3,791	2,903	6,694	
		공휴일	1,316	1,397	2,713	
영등포평생학습관	평일	1,206	1,005	2,211		
	공휴일	-	-	-	일요일: 무료 개방, 일요일 외 공휴일: 폐쇄	
도서관	강동도서관	평일	1,761	1,439	3,200	
		공휴일	763	719	1,482	
	강서도서관	평일	509	428	937	2017.6.12.~8.6., 2018.8.27.~11.14. 휴관
		공휴일	81	81	162	
	강남도서관	평일	1,132	866	1,998	
		공휴일	-	-	-	공휴일 무료 개방
	개포도서관	평일	2,391	1,698	4,089	
		공휴일	-	-	-	공휴일 무료 개방
	고척도서관	평일	-	-	-	무료 개방
		공휴일	-	-	-	무료 개방
	구로도서관	평일	64	43	107	
		공휴일	-	-	-	공휴일 무료 개방
	남산도서관	평일	4,276	2,969	7,245	2018. 7월 주차장 공사
		공휴일	1,615	1,792	3,407	2018. 7월 주차장 공사
	도봉도서관	평일	414	439	853	2016.11월 휴관
		공휴일	118	132	250	2016.11월 휴관
	동대문도서관	평일	-	-	-	주차장 없음
		공휴일	-	-	-	주차장 없음
동작도서관	평일	14	3	17		
	공휴일	-	-	-	공휴일 무료 개방	
서대문도서관	평일	3,420	2,338	5,758		
	공휴일	1,339	1,306	2,645		
송파도서관	평일	5,119	4,128	9,247		

구분	기관명	주차장 이용 현황(월 누계 대수)				비고
		평일/ 공휴일	2019년			
			1월	2월	소계	
	양천도서관	공휴일	5,426	4,902	10,328	
		평일	2,145	2,097	4,242	
	어린이도서관	공휴일	1,204	1,039	2,243	
		평일	2,288	1,653	3,941	
	용산도서관	공휴일	1,045	946	1,991	
		평일	959	726	1,685	
	정독도서관	공휴일	598	570	1,168	
		평일	5,155	4,109	9,264	2017.6월 사용수익업체 변경
종로도서관	공휴일	2,108	2,918	5,026	2017.6월 사용수익업체 변경	
	평일	-	-	-	주차장 없음	
		공휴일	-	-	-	주차장 없음
		평일	-	-	-	
교육지원청	동부교육지원청	공휴일	-	-	-	무료 개방
		평일	-	-	-	무료 개방
	서부교육지원청	공휴일	-	-	-	무료 개방
		평일	-	-	-	무료 개방
	남부교육지원청	공휴일	-	-	-	무료 개방
		평일	-	-	-	무료 개방
	북부교육지원청	공휴일	-	-	-	무료 개방
		평일	-	-	-	무료 개방
	중부교육지원청	공휴일	69	74	143	
		평일	-	-	-	공휴일 폐쇄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공휴일	-	-	-	무료 개방
		평일	-	-	-	무료 개방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공휴일	-	-	-	무료 개방
		평일	-	-	-	무료 개방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공휴일	-	-	-	무료 개방
		평일	-	-	-	무료 개방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공휴일	-	-	-	무료 개방
		평일	-	-	-	무료 개방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공휴일	-	-	-	서울시(도시관리공단)에서 주차장 운영
		평일	-	-	-	서울시(도시관리공단)에서 주차장 운영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공휴일	-	-	-	무료 개방	
	평일	-	-	-	무료 개방	

[붙임2]

### 부설주차장 운영 현황

구분	기관명	법정 주차면수	주차장 보유현황			주차면수 확보율	주차요금 부과 기준		정기주차권 현황		비고
			유료 주차면수	무료 주차면수	계		무료 시간	5분당 요금	수량	직원 외 정기주차 운영	
본청	서울특별시교육청	148	167	0	167	113%	30분	400원	94	X	
직속기관	과학전시관	30	0	92	92	307%	무료	무료	0	X	
	교육시설관리본부	31	0	31	31	100%	미개방	미개방	0	X	
	교육연구정보원	0 (1973년건축)	17	0	17	100%	10분	150원	12	X	서울시(중부푸른복지사업소)에 서 주차장 운영
	교육연수원	367	385	0	385	105%	60분	150원	40	X	
	유아교육진흥원	9	0	9	9	100%	무료	무료	0	X	
	학생교육원	16	0	30	30	188%	무료	무료	0	X	
	학생체육관	58	74	0	74	128%	30분	200원	4	X	
평생학습관	고덕평생학습관	10	26	0	26	260%	60분	150원	9	X	
	노원평생학습관	14	19	0	19	136%	60분	200원	4	X	
	마포평생학습관	40	39	1	40	100%	60분	250원	17	X	
	영등포평생학습관	22	27	0	27	123%	60분	150원	10	X	
도서관	강동도서관	8	10	0	10	125%	60분	150원	2	X	
	강서도서관	13	19	0	19	146%	60분	50원	8	X	
	강남도서관	3	8	0	8	267%	30분	300원	1	X	
	개포도서관	12	13	1	14	117%	60분	150원	9	X	직원차량은 건물 뒤 유희공간에 주차(주차면 아님)
	고척도서관	11	0	14	14	127%	무료	무료	0	X	
	구로도서관	8	10	0	10	125%	60분	150원	4	X	
	남산도서관	31	39	0	39	126%	60분	250원	13	X	

구분	기관명	법정 주차면수	주차장 보유현황			주차면수 확보율	주차요금 부과 기준		정기주차권 현황		비고
			유료 주차면수	무료 주차면수	계		무료 시간	5분당 요금	수량	직원 외 정기주차 운영	
	도봉도서관	9	12	0	12	133%	60분	200원	6	X	
	동대문도서관	0 (1974년건축)	0	0	0	100%	해당 없음	해당 없음	0	X	
	동작도서관	5	5	0	5	100%	60분	250원	1	X	
	서대문도서관	19	19	0	19	100%	60분	150원	10	X	
	송파도서관	28	54	4	58	207%	60분	300원	11	X	
	양천도서관	27	28	0	28	104%	60분	150원	9	X	
	어린이도서관	0 (1963년건축)	21	0	21	100%	60분	150원	0	X	
	용산도서관	0 (1968년건축)	20	0	20	100%	60분	250원	9	X	
	정독도서관	25	67	0	67	268%	10분	190원	14	X	
	종로도서관	0 (1967년건축)	0	0	0	100%	해당 없음	해당 없음	0	X	
교육지원청	동부교육지원청	28	0	75	75	268%	무료	무료	0	X	
	서부교육지원청	6	0	13	13	217%	무료	무료	0	X	
	남부교육지원청	45	0	73	73	162%	무료	무료	0	X	
	북부교육지원청	45	0	73	73	162%	무료	무료	43	X	
	중부교육지원청	19	35	0	35	184%	30분	400원	19	X	
	강동송파교육지원청	20	0	72	72	360%	무료	무료	35	X	
	강서양천교육지원청	24	0	92	92	383%	무료	무료	0	X	
	강남서초교육지원청	13	0	41	41	315%	무료	무료	22	X	
	동작관악교육지원청	47	0	52	52	111%	무료	무료	29	O	직원 외 이용객 "야간" 정기주차
	성동광진교육지원청	56	60	0	60	107%	30분	250원	30	X	서울시(도시관리공단)에서 주차장 운영
성북강북교육지원청	22	0	39	39	177%	무료	무료	23	X		

[붙임3]

## 서울시청 및 자치구청의 부설주차장 및 공영주차장 운영 현황

(단위: 원)

연번	기관명	5분당 요금	직원월정기주차사 요금 (감면규정적용시)	일반이용자 주차면수 확보율	근거	비고
1	서울시	500	175,000 (35,000)*	규정 없음	자체 규정	장애직원만을대상으로 정기주차운영 (주차요금의80%감면)
2	강남구	300	30,000	규정 없음	자체 규정	
3	강동구	250	해당 없음	규정 없음	자체 규정	
4	강북구	250	30,000	규정 없음	자체 규정	
5	강서구	160	해당 없음	규정 없음	자체 규정	
6	관악구	250	30,000	규정 없음	자체 규정	
7	광진구	160	35,000	60%	자체 규정	
8	구로구	160	56,000	규정 없음	자체 규정	
9	금천구	250	30,000	규정 없음	자체 규정	
10	노원구	250	40,000	규정 없음	자체 규정	
11	도봉구	250	30,000	20%	자체 규정	
12	동대문 구	250	30,000	30%	자체 규정	
13	동작구	250	150,000 (30,000)*	규정 없음	자체 규정	장애직원만을대상으로 정기주차운영 (주차요금의80%감면)
14	마포구	250	30,000	규정 없음	자체 규정	
15	서대문 구	500	30,000	규정 없음	자체 규정	
16	서초구	250	해당 없음	규정 없음	자체 규정	
17	성동구	250	30,000	규정 없음	자체 규정	
18	성북구	250	30,000	규정 없음	서울특별시성북구청사 부설주차장관리조례	
19	송파구	500	180,000 (36,000)*	규정 없음	자체 규정	장애직원만을대상으로 정기주차운영 (주차요금의80%감면)
20	양천구	250	50,000	규정 없음	서울특별시양천구청사 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	
21	영등포 구	300	해당 없음	규정 없음	자체 규정	
22	용산구	250	30,000	40%	자체 규정	
23	은평구	250	해당 없음	규정 없음	자체 규정	
24	종로구	250	30,000	규정 없음	자체 규정	
25	중구	500	30,000	규정 없음	자체 규정	
26	중랑구	500	20,000	30%	서울특별시중랑구청사 부설주차장관리조례	
평균		291	52,190 (32,952)*	36%		해당 없는 기관 제외 평균값

( )\*는 장애직원만을 대상으로 정기주차 운영기관의 감면을 적용 후 실제 사용료

# 관계법령

## 주차장법

[시행 2019. 1. 19.] [법률 제16005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부설주차장은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이면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제1항의 경우에 시설물의 위치·용도·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하여 납부된 비용은 노외주차장의 설치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노외주차장(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이라 한다)를 주어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제4항 후단에 따른 범위에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있는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을 줄여 줄 수 있다.

⑧ 시설물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은 새로운 소유자가 승계한다.

⑨ 제5항과 제7항에 따른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⑩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 제한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⑪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설치기준에 적합한 부설주차장이 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개정으로 인하여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기존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에게 개정된 설치기준에 맞게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⑫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권고를 받은 자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우선적으로 보조할 수 있다.

##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2019. 3. 14.] [대통령령 제29617호, 2019. 3. 12., 타법개정]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9.>

1. 오지·벽지·섬 지역, 도심지의 간선도로변이나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으로서 주차난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3. 단독주택·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별로 정하거나 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호실별로 정하려는 경우
4.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역의 주차장 확보율, 주차장 이용 실태,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다르게 정하려는 경우
5. 대한민국 주재 외국공관 안의 외교관 또는 그 가족이 거주하는 구역 등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 주택 등의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6. 시설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7.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중형 또는 대형 승합자동차만 해당한다)의 출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은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1의 시설물의 종류·규모를 세분하여 각 시설물의 종류·규모별로 강화 또는 완화의 정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구역별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각각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④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1.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관람장, 위락시설 및 주택 중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건축물 안에서 용도 상호간의 변경을 하는 경우. 다만,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높은 용도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